

[특집]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

■
이 규 용

[미리내 천주성삼 성직수도회·신부]

서 론

1.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
 - 1.1. 용어의 정리
 - 1.2.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에 관한 과거 규정
 - 1.3.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에 관한 현행 규정
 2.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에 대한 수도회의 대응 절차
 - 2.1. 교회법 696~700조에 따른 제명 절차
 - 2.2.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에 의해 개정된 694조에 따른 자동 제명 절차
 3.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의 의의
- 결 론
부 록

서 론

“좋기도 좋을시고 아기자기 한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한데 모여 사는 것”이라며 시편 133편을 노래하는 가톨릭 성가 416번의 내용과 같이, 공동생활은 수도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며 수도자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핵심과도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수도회를 아무런 허가 없이 불법으로 떠나 수도원 밖에서 지내는 수도자들은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 안에서 언제나 존재해 왔다. 이러한 수도자들의 존재는 교회에 추문을 일으키고 수도 규율을 저해하며 개인의 성소와 구원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교회법은 이러한 불법 상태를 엄정하게 다스린다. 일정 기간 이상의 불법적 부재는 고유

법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6개월 이상 불법적 부재가 지속할 때는 보편법 규정에 의한 제명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에 대한 제명 절차는 그 과정이 쉽지 않고, 해당 수도자가 연락 두절 되어버릴 경우,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19년 3월 19일,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는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¹⁾을 제정하시어 교회법 694조를 개정하셨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수도자가 불법적으로 수도원을 떠난 후, 소재 불명 상태가 12개월간 지속하면, 그 사실 자체로 제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 소고의 목적은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의 개념과 교회법적 처리 절차를 설명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공동생활」로 어떤 부분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절차와 행정 실무에 대한 부분도 언급함으로써,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에 관하여 수도회 행정 실무자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는지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로 인한 문제를 수도회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처함으로써 수도 생활의 본질인 공동생활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이 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1.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

모든 축성생활회는 교회법 602조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특별한 가족처럼 결속되게 하는 각 회의 고유한 형제적 생활”(vita fraterna)을 영위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수도회는 형제적 생활이 교회법 607조 2항과 608조에 따라 ‘공동생활’(vita communis)으로써 구현된다.²⁾ 그

1) Francesco, “Lettera apostolica in forma di ‘*motu proprio*’ del Sommo Pontefice Francesco *Communis Vita* con la quale vengono mutate alcune norme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Sequela Christi* 45(2019/01), 189-191. 본고의 부록 참조.

2) 모든 사도생활단 회원들도 교회법 731조 1항과 740조에 따라서 공동생활의 의무

리므로 당연히 수도 생활의 본질적 요소인 공동생활³⁾의 필요성은 각 회원이 지정된 집에 상주해야 할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법 665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665조 ① 수도자들은 소속 수도원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상주하여야 하고, 자기 장상의 허가가 없이는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장기간 수도원을 떠나는 경우에는 상급 장상이 평의회 등의 아래 정당한 이유로 수도원 밖에서 지낼 허가를 회원에게 줄 수 있으나 1년 이상은 아니 된다. 다만 병 치료나 학업 또는 회의 이름으로 수행할 사도직의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상들의 권력을 벗어날 마음으로 수도원을 불법적으로 떠난 회원은 장상들이 애써 찾아서 그가 수도원에 돌아와 자기의 성소에 항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수도자들은 자기에게 지정된 수도원에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수도원”(domus religiosa)이란 꼭 정식으로 설립된 수도원(domus erecta)만으로 제한되지는 않고 임시로 설치된 수도원(domus constituta)도 포함한다.⁴⁾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공동생

가 있다. 하지만 재속회의 회원들은 714조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회헌의 규범에 따라 세상의 보통 조건 속에서 혼자서 또는 각각 자기 가정에서 또는 형제적 생활 집단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하므로 회헌에 따라서 공동생활이 의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Cf. Juan M. Anaya Torres, “La separazione dall’istituto di vita consacrata. I. L’assenza dalla comunità”, *Quaderni di diritto ecclesiale*, 23(2010), 458-459.

3) 교회법전 개정 위원회는 “공동생활은 적어도 수도 생활의 매우 필수적인 부분임은 틀림없다”(Vita comunitaria est certissime pars saltem integralius vitae religiosae)고 선언하였고, 이는 지금까지 인준된 교회의 법률에서 모든 형태의 수도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 되어 왔다. Cf. *Communicationes* 6(1974), 79-81.

4) Cf. Velasio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Edizione rivista e ampliata a cura di Vincenzo Mosca*, Venezia: Marcianum Press, 2010, p.498. 교회법 학계는 “수도원의 설립”(erectio domus religiosae)과 “수도원의 설치”(constitutio domus religiosae)를 구별하고 있다. 전자는 교회법 609조에 의한 것으로서 정식으로 법인격을 부여하여 어느 정도 독립되고 안정적인 수도원을 설립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교회법 608조에 의한 것으로서 사도직이나 선교 활동 등, 긴급성과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정식 수도원을 설립할 수 없는 상황 아래에서 수도자들이 수도 생활의 의무를 지키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어떠한 집을 설치해주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의 구별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참조: 기경호, “수도원”, 『축성생활 용어집』, 축성생활신학회 엮음,

활이란, 단순히 같은 공간에 물리적으로 머무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같은 공동체 내에서 형제적 생활의 친교를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준수하는 것(vitam communem servantes)을 의미한다.⁵⁾ 즉, 영적인 의미의 공동생활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유법에 따른 수도회의 영성과 카리스마에 적극적으로 일치하며 미사와 성무일도 등의 공동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석하고 공동 식사와 오락, 여가 활동 등의 공동체 생활에도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임을 자각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수도자의 공동생활은 신학적·교회법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지닌 것이다. 신학적으로 공동생활이란, 공동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명을 공동체의 이름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교회법적으로 공동생활이란, 수도자는 수도서원을 통하여 모든 사적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항상 개인의 이름이 아닌 “수도회의 이름으로” 활동한다는 것에 공동체성의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⁶⁾

따라서, 이러한 영적, 신학적, 교회법적 공동생활의 실현과 보호를 위하여 수도원 상주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존재함에도 현실적으로 수도원 밖에서 지내는 수도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수도자의 부재는 합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적일 수도 있으며, 단기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장기간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용어를 먼저 짚어보아야 하겠다.

프란치스코 출판사, 2015, 82~85쪽; Velasio De Paolis, *op.cit.*, pp.312~319.

5) Cf. Luigi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vol.1, Bologna: EDB, ³2011, p.794.

6) Cf. Juan M. Anaya Torres, *op.cit.*, p.297.

1.1. 용어의 정리

1.1.1. 부재(absentia)

교회는 수도자가 수도원 밖에서 지내는 경우를 법적으로 “부재”(absentia)라고 표현해왔다.⁷⁾ 이는 수도자의 상주 의무에서 벗어나는 수도 생활의 예외적 경우이다. 물론, 수도원 밖으로 잠시 외출한다고 해서 그것이 엄밀한 의미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는다.⁸⁾ 교회법은 “부재”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마법에서 비롯되고 몇몇 수도회의 고유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24시간 이상 연속하여 수도원을 벗어나면 일반적으로 부재라고 인정되고 있다. 이 원칙은, 만일 고유법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별다른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⁹⁾

한편, 교회법 665조 1항에 따라서 합법적인 장상의 “허가”(licentia)가 있었다면 “합법적 부재”(absentia legitima)라고 부르고, 장상들의 권력에서 벗어날 마음으로 허가 없이 수도원을 벗어났다면 “불법적 부재”(absentia illegitima)라고 부른다.

7) “Absentia”라는 라틴 단어는 동사 “abesse”에서 나온 말로써, 어떤 특정한 곳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것(non adesse)을 뜻한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로마법에도 있었으며, 오늘날 교회법에는 수도자가 자기 수도원을 벗어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될 뿐만 아니라, 주소 및 준주소, 선거, 재치권, 교구장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상주 의무, 혼인법 등과 관련해서도 쓰인다. Cf. Aitor Jiménez Echave, “Absentia a domo Instituti (CIC Can.665)”, *Sequela Christi* 36(2010/02), 189~190.

8) 어떤 용무나 임무로 인하여 몇 시간 동안 수도원을 벗어나는 것은 교회법 규정에서 다루는 “부재”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도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수도자 일상의 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외출도 오늘날 수도 생활의 일상적 요소로 간주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 고유법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외출에 대한 허가는 주로 추정된다고 여겨지므로, 반드시 장상의 ‘명시적’ 허가가 매번 필요하지는 않다. Cf. Antonio Calabrese, *Istituti di vita consacrata e Società di vita apostolica*, Roma: Libreria Editrice Vaticana, ³2010, p.260; Juan M. Anaya Torres, *op.cit.*, p.470.

9) Cf. *Ibid.*, p.259.

1.1.2. 합법적 부재(absentia legitima)와 봉쇄 해제(exclaustratio)

한편, “합법적 부재”는 “봉쇄 해제”(exclaustratio)와는 다른 개념이다. 둘 다 상주 의무의 예외적인 경우라는 공통점은 존재하지만, 봉쇄 해제는 교회법 686-687조에 따라서 “중대한 이유”(causa gravis)로 종신서원 수도자에게 윤택되거나 부과되어 일시적으로 수도회 밖에서 지내게 하는 제도이지만, 합법적 부재는 “정당한 이유”(causa iusta)로 인하여 교회법 655조에 따른 관할 장상의 허가로서 일시적으로 수도자를 수도원 밖에서 지내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¹⁰⁾

1.1.3. 단기간 부재(absentia brevis)와 장기간 부재(absentia diuturna)

더 나아가, 합법적 부재는 다시 “단기간 부재”(absentia brevis), “장기간 부재”(absentia diuturna)로 나뉜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의 어느 시점부터 단기간인지 장기간인지 교회법 조항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법 학자들은 이것이 개별 수도회 고유법 규정에 맡겨져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고유법도 침묵한다면 회의 관습에 의지하거나, 지역 장상은 상급 장상¹¹⁾에게 문의해야 할 것이

10) 참조: “합법적 부재”에 대하여 다루는 교회법 655조는 “제4절 회 및 그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속한 조항이지만 “봉쇄 해제”에 관하여 다루는 686-687조는 “제6절 회원의 퇴회. 제2관 회에서 나감”에 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합법적 부재”는 단순히 수도자의 공동생활 의무만 면제해 줄 뿐, 다른 의무는 모두 그대로 남겨 두지만, “봉쇄 해제”는 그 기간만 다를 뿐 퇴회에 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합법적 부재”는 물리적 의미로만 “수도원’ 밖에서 지내는 것”이지만, “봉쇄 해제”는 더 나아가 영적인 의미에서도 “수도회’ 밖에서 지내는 것”인 셈이다. 따라서, “합법적 부재”에 대한 장상의 허가는 수도 생활의 다른 권리와 의무들에 관한 제한이나 면제까지 내포하지 않으나, “봉쇄 해제”는 새로운 생활 조건과 병행할 수 없는 의무도 면제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제한되며 수도복 착용도 금지할 수 있다(687조 참조). 또한, “봉쇄 해제”는 종신서원자에게만 내려지지만, “합법적 부재”는 유기서원자에게도 내려질 수 있다.

11) 상급 장상(Superior maior)이란 특수한 교회법적 용어로서, 교회법 620조의 정의를 따라야 한다. 즉, “수도회 전체 또는 관구 또는 관구와 동등한 일부분, 또는 자치(수도)원을 다스리는 이들 및 그들의 대리들이다”(620조). 다시 말하면, 총원장과

다.¹²⁾ 분명한 것은 수도원의 일상에서 벗어나는 며칠이나 몇 주 이내의 부재, 예를 들어 휴가와 같은 것은 단기간 부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¹³⁾

단기간 부재의 경우, 허가권자는 일반적으로 지역 장상(*superior localis*)이지만,¹⁴⁾ 교회법 667조 3항에 언급된 수녀승들의 수도승원은 더 엄격한 봉쇄의 규율이 지켜져야 하므로 「기도하는 마음」(*Cororans*)의 175조에 따라서 봉쇄 관면을 주는 것은 오로지 수녀승들의 상급 장상(*superiora maior*)에게 있으며, 그러한 관면이 15일을 초과할 때는 평의회 동의의 얻어야 한다.¹⁵⁾

장기간 부재가 1년을 넘지 않는다면, 상급 장상이 평의회 동의 아래 정당한 이유로¹⁶⁾ 수도원 밖에서 지낼 허가를 회원에게 줄 수

관구장, 자치 수도원장 및 그들의 대리이다.

12) 교회법 학자마다 언제부터 단기간 부재가 아닌 장기간 부재인지는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 예를 들면, 오레일리(M. O'Reilly)는 6개월을 초과하는 부재가 장기간 부재라고 한다. 그런데 저명한 학자인 베이어(J. Beyer)는 단지 여러 개월이라고만 언급하고 있고, 데파올리스(V. De Paolis)는 한 달 이후부터는 장기간 부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각 수도회는 언제부터 665조 1항이 적용되는 “장기간 부재”인지를 규정하는 고유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며, 이는 부재의 이유와 부재시 머무는 장소, 각 수도회의 성격과 관습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Cf. Michael O'Reilly, “Permission of absence from the community”, *Informationes SCRIS* 10/2(1984), 71; Jean Beyer,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Milano: Ancora, 1989, p.351; Velasio De Paolis, *op.cit.*, p.499; Juan M. Anaya Torres, *op.cit.*, pp.460-461; Jesus Torres, “L’assenza dalla casa religiosa”, *Informationes SCRIS* 19(1993), 97.

13) Cf. Antonio Calabrese, *op.cit.*, p.259.

14) Cf. Luigi Chiappetta, *op.cit.*, p.794.

15) 참조: 교황청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 『기도하는 마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113쪽. 이 최근의 훈령은 여자 관상 생활에 관한 교황령 「하느님 얼굴 찾기」 시행 훈령으로서 현행 교회법전 몇몇 조항의 개정을 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665조 4항의 개정으로서, 이제 더 이상 교구장 주교나 남자 수도회 직권자가 봉쇄 수녀승들의 봉쇄 관면에 대한 특별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기도하는 마음, 174조).

16) 1917년 교회법전 606조 2항은 “중대하고 정당한 이유”(gravi et iusta de causa)로 인한 6개월 이내의 장기간 부재만 허용하였다. 하지만 현행 교회법전은 오직 “정당한 이유”(iusta de causa)만을 언급하고 있다. 비록 어떤 이유가 정당한 것인지 교회법이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계에서는 다양한 이유들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록 공적인 이유가 아닌 사적인 이유로도 장상의 판단에 따라서 정당하다고

있다. 다만, 병 치료나 학업 또는 회의 이름으로 수행할 사도직의 이유가 있으면 1년이 넘는 장기간 부재도 같은 방법으로 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병 치료는 육체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 혹은 심리적 질환도 포함되나,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수도자 자신의 병환이어야만 한다. 학업의 이유는 단지 수도자 자신이 학생으로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로서 가르치는 것도 포함한다. 회의 이름으로 수행할 사도직의 이유로 장기간 부재가 예상된다면, 상급 장상은 반드시 평의회 동의의 얻어 해당 수도자에게 그 임무를 부여해야만 할 것이다.¹⁷⁾ 1년이 넘는 장기간 부재가 가능한 이유는 오직 이 세 가지 뿐이다. 다른 이유로 1년이 넘도록 수도원 밖에서 지낼 수 있으려면 사도직에 청원하거나 교회법 686조에 따라서 “봉쇄 해제”를 받아야 한다. 수녀승들의 장기간 부재는 「기도하는 마음」 176조를 따라서 상급 장상이 평의회 동의 아래, 교구장 주교나 관할 수도회 직권자의 의견도 들은 후, 장엄서원 수녀승에게 내려질 수 있다.¹⁸⁾

간주될 수 있는데, 성소 식별, 심신의 휴식, 아픈 가족의 간병, 또는 그 밖의 사적 용무들이다. 특히 사스트레(E. Sastre Santos)는 아픈 부모를 간병하는 수도자들의 경우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는데,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수도회가 최대한 도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예를 들어, 수도자의 부모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하며, 아픈 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을 때에는 수도원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수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자들도 순번을 정하여 그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기간 부재”를 청하지 않고도 아픈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장상이 배려해야 할 터인데, 앞서 말했듯이, 부모를 수도원으로 모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가 부모의 거처와 가까운 수도원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사스트레는 설명하였다. 또한, 애덕 사업을 주로 하는 수도회는 자기 수도회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회 수도자의 부모를 돕는 사도직 사업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Cf. E. Sastre Santos, “Nota sobre la Religiosa y el servicio a sus padres necesitados”, *Commentarium pro Religiosis et Missionariis* 75(1994), 203-219; Antonio Calabrese, *op.cit.*, p.261; Juan M. Anaya Torres, *op.cit.*, p.463.

17) 예를 들어, 상급 장상이 어떤 수도자에게 인사명령을 내릴 때, 그에게 단기간 부재만이 예상된다면 회헌에 따라서 평의회 동의의 얻어 필요가 없으나, 장기간 부재이나 1년 이상의 부재도 예상된다면 반드시 평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Cf. Antonio Calabrese, *op.cit.*, p.266; Domingo Andrés, *Le forme di vita consacrata. Commentario teologico-giuridic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Ediurcla, 2014, pp.466-467.

18) 참조: 교황청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 앞의 책, 115쪽. 해당 지침 176조에

1.1.4. 불법적 부재(absentia illegitima)

수도자가 언제나 장상의 합법적 허가를 받고 수도원에서 나와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수도자가 불법적으로 수도원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 왔다. 몇몇 수도회에서 “무단이탈”이라고도 부르는 이러한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인 일탈 행위로 일어난 수도 있고, 오랜 기간 숙고 끝에 성소를 다시금 식별하는 과정의 마지막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떤 이유로든지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는 수도 생활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공동생활을 거스르는 심각한 일탈 행위로서, 수도회로부터 제명까지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잘못으로 여겨진다.¹⁹⁾

1.2.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에 관한 과거 규정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를 두 가지로 구별하였다. 하나는 “변절”(apostasia)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탈주”(fuga)이다.²⁰⁾ 변절과 탈주를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해당 수도자의 지향 또는 의도이다. 즉, 만약 수도자가 다시는 수도회에 돌아오지 않을 마음으로 수도원을 불법적으로 떠나거나, 합법적으로 부재중에 수도적 순명에서 벗어날 의도로 사실상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를 “수도회에 대한 변절자”(apostata a Religione)²¹⁾라고 부른다. 반면에, 수도

따르면, “수도회 밖의 거주에 관한 교회법 665조 1항의 규범은 봉쇄 수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훈령 「말씀의 신부」의 규정은 폐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665조 1항의 규정이 다시 봉쇄 수녀들에게 적용되므로, 봉쇄 수녀들의 합법적 부재에 관한 사항은 모두 1983년 교회법전이 처음 반포되던 시절로 되돌아가, 다시 상급 장상의 권한에 맡겨지게 되었다. Cf. Sebastiano Paciolla, “Cor orans. Una vocazione nel cuore della Chiesa”, *Sequela Christi* 44(2018/1), 121~122.

19) 참조: 교회법전 696조 1항.

20) 참조: 1917년 교회법전 644조 1~3항.

21) “수도회에 대한 변절”(apostasia a Religione)은 “가톨릭 신앙에 대한 배교”(apostasia a fide catholica)와는 다른 개념이다. 둘 다 “아포스타시아”(apostasia)라는 같은 용어를

자가 장상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도원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탈주자”(fugitivus)라고 부른다. “변절자”와 “탈주자”는 비록 수도원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수도서원과 고유법에 결부된 모든 의무에 매여 있다. 그러므로 다시 공동생활로 즉시 되돌아올 무거운 의무가 부과된다.²²⁾ 아울러 장상들에게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조사하고 찾아내어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촉구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것이 허사로 돌아가면 교회법에 따라서 제명 절차가 착수된다.²³⁾

위 두 경우와는 별개로, 1917년 교회법전 646조 1항 2호에 따라서, 수도자가 이성과 함께 도망가면 자동제명 된다.²⁴⁾

1.2.1. 수도회에 대한 변절(apostasias a Religione)

“변절”(apostasias)을 구성하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마음으로 수도원을 불법적으로 떠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합법적으로 수도원을 떠난 후, 수도적 순명에서 벗어날 마음으로 사실상 수도회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수도자는 반드시 종신서원 수도자여야만 한다. 유기서원자에게 “변절”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유기서원이 종료되면 더 이상 수도자가 아니게 되므로 그들에게 “순명 서원을 위반하여 수도회를 영구적으로 떠날 지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²⁵⁾

변절의 질료적 요소(elementum materiale)는 수도원을 불법적으로

쓰지만, 무엇에 대한 배신이나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렐리지오”(Religio)라는 단어는 오늘날엔 “종교”라는 의미로 널리 번역되지만,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수도회를 뜻하는 특수한 법적 용어로 쓰였다(1917년 교회법전 488조 1호 참조).

22) 참조: 1917년 교회법전 645조 1항.

23) Cf. Felix Cappello, *Summa iuris canonici in usum scholarum concinnata. Volumen 2*, Roma: Pontificia Universitas Gregoriana, ⁵1951, p.89; Arturo Tabera, et al., *Il diritto dei religiosi. Manuale teorico pratico sugli Stati di perfezione*, Roma: Commentarium pro religiosis, 1961, pp.540-541, p.577.

24) 참조: 1917년 교회법전 646조 1항 2호.

25) Cf. Arturo Tabera, et al., *op.cit.*, p.537.

떠나는 것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허가 없이, 혹은 속임수나 다른 불법적 방법으로 허가를 무효하게 강탈하여 수도원을 몰래, 혹은 드러나게 떠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록 합법적으로 수도원에서 나왔더라도 합법적 기간이 끝난 후, 사실상 수도원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봉쇄 해제나 합법적 부재가 허가된 기간이 끝났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변절의 형식적 요소(*elementum formale*)는 “수도적 순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도회를 영구적이고 결정적으로 떠나려는 구체적인 지향”이다. 이는 어떤 특정한 장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과는 다른 것이니, 수도 생활 그 자체로부터 떠나려는 마음이어야 한다.²⁶⁾ 이러한 “악의”(malitiosus animus)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불법적으로 부재중인 수도자가 한 달 이내에 돌아오지 않거나, 장상에게 곧 돌아오겠다는 의향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악의가 법적으로 추정된다.²⁷⁾ 따라서 비록 그가 그러한 악의를 내적법정에서는 품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적법정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에게 “변절”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다.²⁸⁾

“변절자”에게는 1917년 교회법전 2385조에 따른 교회법적 형벌도 규정되어 있었다. 즉, “변절”의 행위 그 자체로 그에게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이 파문 제재는 고유 상급 장상에게 유보되나, 평신도 수도회나 비면속 성직 수도회일 경우, 그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지역의 교구 직권자에게 유보된다. 또한, 1917년 교회법

26) Cf. Matthaeus Conte a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ad usum utriusque cleri et scholarum*. volumen 1, Roma: Domus Editorialis Marietti, ³1947, p.846.

27) 이러한 추정을 “단순 법적 추정”(praesumptio iuris tantum)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반대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더 이상 추정의 효력이 사라진다. 따라서, 수도자가 비록 한 달을 초과하는 불법적 부재를 하였더라도, 그가 수도적 순명을 거스르려는 지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증명된다면, 그에게 “변절”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Cf. Gommarus Michiels, *Normae generales iuris canonici. Volumen primum*, Paris: Typis Societatis S. Joannis Evangelistae, ²1949, p.434.

28) Cf. Timotheus Schaefer, *De Religiosis ad normam codicis iuris canonici*, Roma: Editrice “Apostolato Cattolico”, ⁴1947, pp.931~933; Arturo Tabera, et al., *op.cit.*, pp.537~539.

전 2256조 2호에 열거된 법적 행위들에서 배제되며,²⁹⁾ 수도자들에게 공통된 특전과 자기 수도회의 고유한 특권도 박탈당한다. 또한, 다시 수도회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사도좌의 관면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vox activa et passiva*)³⁰⁾을 잃는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 죄의 경중에 따라서 장상에 의하여 수도회 고유법에 따른 다른 형벌로도 처벌되어야 한다.³¹⁾

1.2.2. 탈주(*fuga*)

“탈주” 또한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사라진 개념으로서, 수도자가 다시 돌아올 의향을 가진 채, 장상의 합법적인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수도원으로부터 나오거나, 합법적으로 나왔더라도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돌아오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종신서원 수도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변절”과는 달리, “탈주”는 유기서원 수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었다.

“탈주”가 “변절”과 구별되는 핵심적 차이점은 해당 수도자의 악의(*malitiosus animus*)가 ‘영구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에 따른다. 즉, 그가 수도적 순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향은 “변절”과 같지만, 그것이 일시적이어야 탈주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서원자도 서원 기간 내에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다면 탈주이다. 다만 탈주 중에 서원이 만료되면 탈주도 종료되고 수도자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³²⁾

변절과는 달리, 탈주는 수도원을 떠나는 것이지 수도회나 수도

29) 1917년 교회법전 2256조 2호에 열거된 법적 행위란 다음과 같다. 즉, 교회 재산 관리자의 임무, 교회 소송에서의 재판관과 예심관, 보고관, 성사보호관, 검찰관, 공증관, 사무처장, 변호인,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세례와 견진에서 대부모의 역할, 교회 선거에서의 투표권 행사, 교회록 보호권 행사이다.

30) 흔히 “*vox activa et passiva*”를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번역하지만, 여기서 “*vox*”는 단지 선거와 관련된 권한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즉, “*vox activa*”는 선거권보다 더 넓은 의미의 “투표권”을 의미하므로, 총회나 관구 회의, 수도원 회의에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결할 때 행사하는 표결권도 의미한다.

31) Cf. *Ibid.*, p.541.

32) Cf. *Timotheus Schaefer, op.cit.*, p.933.

생활 자체로부터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장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만으로도 탈주가 적용된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의향은 꼭 수도원이 아닌 수도회로 되돌아올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³³⁾

보편법은 “탈주”에 대한 추정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언제나 고유법의 규정을 존중하면서, 이틀이나 사흘간의 불법적 부재로도 탈주를 추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종신서원자의 경우, 탈주의 추정은 한 달을 넘길 수 없으니, 한 달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변절”이 추정되기 때문이다. 즉, 그의 불법적 부재가 한 달을 넘길 경우, 수도회를 떠나려는 지향이 영구적인 것으로 추정된다.³⁴⁾

“탈주자”에게는 1917년 교회법전 2386조에 따른 교회법적 형벌도 규정되어 있었다. 즉, 그가 맡은 수도회의 모든 직책이 자동으로 박탈되고, 대품 성직자이면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도 받는다. 이러한 정직 제재는 성직 수도회일 경우에는 해당 상급 장상에게, 평수사회일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에게 유보된다. 탈주자가 다시 수도회로 돌아오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회헌의 규정대로 처벌되어야 한다.

1.2.3. 이성과 함께 도망 (*fuga arrepta cum persona alterius sexus*)

1917년 교회법전 646조 1항 2호에 따르면, 수도자가 이성과 함께 도망치면 그 사실 자체로 제명되었다. 이는 644조의 “변절”(apostasia)이나 “탈주”(fuga)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장상의 권력이나 수도적 순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향과는 상관없이, 이성과 함께 도망치는 행위 그 자체로 자동 제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

33) 그러므로 어떤 수도자가 특정한 장상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합법적인 허가 없이 어떤 수도원에서 같은 수도회의 다른 수도원으로 옮겨 가, 불법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탈주라고 볼 수 없다. Cf. *Ibid.*, pp.539-540.

34) Cf. Arturo Tabera, et al., *op.cit.*, p.539.

서 “도망”의 의미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급히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도자가 이성 과 함께 수도원에서 급히 나오거나, 홀로 나왔더라도 이성 과 함께 동거를 시작하기 위하여 그러하였다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³⁵⁾

이 경우, 상급 장상은 자신의 평의회나 회의와 함께 그가 자동 제명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모은 증거 자료와 함께 문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³⁶⁾ 이 선언은 자동 제명의 효과와는 무관하다. 즉, 제명은 내적 법정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선언은 그것을 외적 법정에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선언을 위한 절차는 회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회헌은 어떤 상급 장상이 이 선언을 해야 하며, 평의회와 회의는 어떤 방법으로 이 절차에 참여하는지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동 제명된 이가 대 품 성직자일 경우, 상급 장상은 이 선언문을 그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구 직권자에게도 알리는 것이 좋다.³⁷⁾

이상으로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에 관한 과거 규정을 살펴본 후, 1983년 교회법전이 반포되고 나서 현재에는 어떤 규정으로 그러한 불법적 상황을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1.3.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에 관한 현행 규정

오늘날에는 더 이상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를 “변절”이나 “탈주”로 구별하지도 않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는다. 또한, 수도자가 이성 과 함께 도망쳤다고 해서 즉시 자동 제명되는 규정도 모두 폐지되었다. 다만 현행 교회법에 의하면, “장상들의 권력을 벗어날 마음으로 수도원을 불법적으로 떠나는 행위”³⁸⁾만이 불법적 부재로 규정된다.

35) Cf. *Ibid.*, pp.544-546.

36) 참조: 1917년 교회법전 646조 2항.

37) Cf. Arturo Tabera, et al., *op.cit.*, p.547.

38) 참조: 교회법전 665조 2항.

현재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를 다루는 교회의 법률은 교회법 665조 2항과, 696조 1항 이하의 제명에 관한 부분,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에 의해 개정된 교회법 694조이다.

1.3.1. 교회법 665조 2항

교회법 665조 2항에 따르면, 현재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가 장상의 허가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도원을 떠나 있어야 한다. 이는 아무런 허가 없이 수도원을 떠나거나, 혹은 외출이나 휴가, 장기간 부재, 봉쇄 해제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떠난 후,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복귀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장상들의 권력을 벗어날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존재할 때에 불법적 부재라고 부른다. 즉, 그의 부재가 합법적이진 않지만, 장상들의 권력을 벗어날 의도가 없었다면 불법적인 부재가 아니고,³⁹⁾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⁴⁰⁾

장상의 허가 자체가 무효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권한이 없는 장상이 장기간 부재를 청원한 수도자에게 실수로 그러한 허가를 주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도원을 떠나 있더라도 “장상들의 권력을 벗어날 마음”이 없으므로 불법적 부재는 아니다.⁴¹⁾ 다만, 수도자가 장상의 실수를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 하였다면, 이는 불법적 부재에 해당한다.⁴²⁾ 또한, 수도자가 속임수

39) 예를 들어, 어떤 수도자에게 주어진 장기간 부재나 봉쇄 해제 기간이 끝났지만, 그 사실을 몰랐거나, 주어진 기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나, 다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도원에 미처 복귀하지 못했다면, 그는 비록 불법적으로 수도원 밖에 머무르고 있지만, 교회법 655조에서 말하는 불법적 부재는 아닌 것이다.

40) Cf. Domingo Andrés, *op.cit.*, p.467.

41) 수도자들은 장상들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존재한다. “*Curia novit iura*”. 따라서 법에 어긋난 허가를 내린 장상의 책임이다.

42) Cf. Antonio Calabrese, *op.cit.*, p.269. 교회법 67조 3항은 “답서가 무효인지 아닌지의문이 있으면 답서자에게 소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진실의 은폐, 혹은 강압으로 장상의 허가를 받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수도원을 떠난다면 이 또한 불법적 부재이다.⁴³⁾

교회법 665조 2항의 후반부는,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에 대한 장상⁴⁴⁾의 의무를 규정한다. 즉, 장상들은 그러한 수도자를 “애써 찾아서 그가 수도원에 돌아와 자기의 성소에 항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⁴⁵⁾는 것이다. 성소에 항구하다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수도회와 교회를 위한 선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장상은 오직 여러 번의 자부적 노력과 시도 끝에 복귀 불가능성이 입증되고 난 후에야 법적인 조치와 절차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가 정말로 돌아왔다면, 장상은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그가 자기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공동체 안에서 완전한 일치와 친교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⁴⁶⁾

1.3.2. 교회법 696조 1항

불법적으로 부재중인 수도자를 찾아 돌아오게끔 하려는 장상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부재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하면,

43) 교회법 63조는 답서의 유효성을 장애하는 이유로 진실의 은폐, 은닉, 기만, 허위 진술 등을 언급한다. 그리고 교회법 125조 1항은 “본인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외부에서 가해진 힘 때문에 행한 행위는 아니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한다.

44) 여기서 말하는 “장상”이란 고유럽에 따라서 해당 수도자와 직접적인 종속 관계를 가지는 모든 장상을 말한다. 즉, 주로 관구장과 같은 상급 장상과 해당 수도자가 등록된 집의 지역 장상(수도원장)이다. 만일, 수도회가 관구로 나뉘지 않았다면 총원장이 모든 수도자의 직속 상급 장상이므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Cf. *Ibid.*

45) 교회법전 665조 2항.

46) Cf. Aitor Jiménez Echave, *op.cit.*, p.192. 혹시 해당 수도자에게 성소의 위기나 영적 어려움이 있었다면, 장상은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식별과 영적 회복을 위하여 피정, 휴식,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만일, 수도자가 지역 장상과의 마찰이나 그의 과도한 권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인하여 수도원을 무단이탈하였다면, 즉시 상급 장상이 그 문제에 대해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Cf. Antonio Calabrese, *op.cit.*, p.270.

교회법 696조 1항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제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수도자가 불법적 부재중인 것을 장상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애써 찾고 그가 돌아와 성소에 항구하도록 도와주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불법적 부재라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장상의 목인은 합법적 부재를 위한 허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재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장상은 그를 제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도 없다.⁴⁷⁾

혹시라도 장상이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필요한 법적 조치나 제명 절차를 시행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수도자는 수도원 밖에 머무른 기간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 기간과 상관없이 불법적 부재중에도 수도서원의 의무와 모든 규칙과 규율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가 수도원 밖에 오래 머무를수록 하느님께 서원한 바를 쉽게 거스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므로, 그 개인의 선익과 구원을 위해서라도 장상은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러한 수도자가 존재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동체의 규율과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자기 회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⁴⁸⁾

하지만, 교회법 696조 1항에서 “[...] 제명될 수 있다”(“[...] *dimitti etiam potest* [...])라고 말하듯이, 6개월 이상의 불법적 부재라고 해서 반드시 제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 앞의 695조는 반드시 제명되어야 하는 범죄들, 다시 말하면 “의무적 제명”(*dimissio obligatoria*)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696조 1항은 장상의 판단에 따라서 제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죄과들, 다시 말해 “선택적 제명”(*dimissio facultativa*) 사유들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6개월간의 불법적 부재는 선택적 제명의 여러 사유 중 하나일 뿐이므로, 장상의 판단하에 제명 절차를 더 뒤로 미루는 것이 공동

47) Cf. Velasio De Paolis, *op.cit.*, p.585.

48) Cf. *Ibid.*, p.501. 교회법 1389조 2항은 “죄과 있는 태만으로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이나 임무의 행위를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꺾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체의 규율에 대한 손해보다 당사자와 수도회에 더 이롭다고 판단 되면 비록 6개월을 초과하는 불법적 부재라도 제명 절차에 바로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⁴⁹⁾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도자의 심각한 비행에 대하여 장상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므로, 장기간 불법적 부재에 대한 장상의 개입과 적합한 조치는 필수적이고 의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상의 법적 조치에도 수도자가 자신의 비행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제명까지 이르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수순일 것이다.⁵⁰⁾

1.3.3.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

2019년 3월 19일 성 요셉 대축일에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는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에 서명을 하시면서 교회법 694조를 개정하셨다. 이 사실은 2019년 3월 27일 사도좌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실림으로써 공포되었다.

이 자의교서는 수도자의 자동 제명(*dimissio ipso facto*)의 사유를 열거하는 교회법 694조 1항에 한 가지 사유를 더 추가한다. 기존의 두 가지 자동 제명 사유, 즉, “1. 가톨릭 신앙에서 공공연하게 떠난 자”⁵¹⁾와 “2. 혼인을 맺을 맺었거나 국법상만으로도 혼인을 시도한 자”⁵²⁾ 다음에, 694조 1항 3호를 더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였다. “3. 665조 2항에 따라, 현재 소재 불명 상태로 12개월 동안 계속 불법적으로 수도원을 떠난 자.”⁵³⁾ 이 개정은 2019년 4월 10일부터 효력을 가지도록 명시되었다. 하지만 그 효력이 과거로 소급되지는 않는다.⁵⁴⁾

49) Cf. *Ibid.*, p.583.

50) Cf. Tiziano Vanzetto, “La dimissione nella vita consacrata”, in *Il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IV. Prassi amministrativa e procedure speciali*, Gruppo Italiano Docenti di Diritto Canonico(ed.), Roma: Lateran University Press, 2014, p.408.

51) 교회법전 694조 1항 1호.

52) 교회법전 694조 1항 2호.

53) 교회법전 694조 1항 2호; Francesco, “Motu proprio *Communis vita*”, *L'Osservatore Romano*(Edizione italiana), 27 marzo 2019, 9.

이렇게 교회법 조항을 개정한 이유는 수도원을 불법적으로 떠난 자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어 왔기 때문이다. 교회법 665조 2항은 장상에게 불법적으로 떠난 수도자를 찾아 그가 되돌아와 자기 성소에 항구하도록 도와줄 것을 명한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떠난 수도자들이 수도회와 연락을 끊고 행방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하였다. 그래서 교회법 696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서 6개월 이상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를 제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 제명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상들이 많았다. 따라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는 교회법 694조를 개정하여 소재 불명 상태로 12개월 동안 계속 불법적으로 수도원을 떠난 수도자를 자동 제명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자동 제명 절차는 다른 사유들처럼 기존 694조 2항과 동일하다. 즉, “② 이러한 경우에, 상급 장상은 자기 평의회와 더불어 지체 없이 증거를 모은 후, 그 사실에 대한 선언을 내려 제명이 법적으로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⁵⁵⁾ 다만, 12개월 소재 불명 상태의 불법적 부재에 의한 자동 제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교회법 694조 3항이 새로 추가 되었다. “③ 위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이 선언이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성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교구 설립 수도회의 경우 이 추인은 본원 소재지 주교의 소임이다.”⁵⁶⁾ 이렇게 추인권자가 불법적 부재로 인한 자동 제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재속회 회원들은 비록 축성생활자이기는 하지만 공동생활의 의무가 없으므로, 교회법 729조⁵⁷⁾의 개정도 불가피하게 되었

54) 교회법 9조는 “법률들은 미래에 적용되고 과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법률들에 과거에 대하여 각별히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9조의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서 그 효력이 과거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Cf. José Rodríguez Carballo, “Nel segno della responsabilità condivisa”, *Communicationes* 51(2019), 128.

55) 교회법전 694조 2항.

56) 교회법전 694조 3항; Francesco, “Motu proprio *Communis vita*”, *L'Osservatore Romano* (Edizione italiana), 27 marzo 2019, 9.

다. 왜냐하면, 729조에 따르면 재속회 회원들도 694조에 따라서 자동 제명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로 인하여 694조의 자동 제명 사유에 12개월간 소재 불명 불법적 부재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729조는 같은 자의교서를 통하여 “회원은 694조 1항 1호와 2호, 그리고 695조의 규범에 따라 회에서 제명된다[···]”라고 알맞게 수정되었다.

2.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에 대한 수도회의 대응 절차

지금까지 불법적 부재에 관한 “실체법”(ius substantiale)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절차법”(ius processuale)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현행 교회법전에 따르면 장상은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를 따를 수 있다. 하나는 교회법 696~700조에 따른 선택적 제명 절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에 의해 개정된 694조에 따른 자동 제명 절차이다.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교회법 665조 2항에 따라서 장상은 무엇보다도 먼저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를 애써 찾아 그가 되돌아와 성소에 항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든지, 수도자가 언제라도 되돌아오면 모든 절차를 멈추고 그가 다시 수도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⁵⁸⁾ 제명 절차는 언제나 장상의 모든 노력이 허사

57) 교회법전 729조: “회원은 694조와 695조의 규범에 따라 회에서 제명된다. 회원은 그 외에도 비교적 중대하고 외적이며 죄책이 있고 법적으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다른 제명 이유들도 정하여야 하고, 697~700조에 규정된 제명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제명된 자는 70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8)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장상은 다시 돌아온 수도자를 위하여 애덕적 차원에서 휴식, 피정, 영적 혹은 심리적 상담 등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겠지만, 공동체의 질서와 공정을 세우기 위하여 그의 의무 위반과 불순명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도회는 고유법을 마련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면, 임무나 직책의 파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수도회 내 어떤 특

로 돌아간 후 적용되어야 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1. 교회법 696~700조에 따른 제명 절차

교회법 696조 1항은 “665조 2항에 언급된 불법적 부재가 6개월간 지속되는 때 [...] 제명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유가 충족 되면, 상급 장상은 697조 이하의 규범에 따라서 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제명 절차는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방불명되어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재 불명 수도자의 경우,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에 의해 개정된 694조에 따른 자동 제명 절차에 따라서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교회법 696~700조에 따른 제명 절차는 이제 연락 불가능한 수도자에게는 자주 적용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2.1.1. 장상의 복귀 권고와 불법적 부재 선언

장상은 수도자가 수도원을 불법적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665조 2항에 따라서 그를 애써 찾아 그가 수도원에 돌아와 자기의 성소에 항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상은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의 원인과 사유가 무엇인지 성실하게 조사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당 수도자와 연락하거나 직접, 혹은 타인을 통하여 만나 설득하여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 장상의 서명과 함께 문서로 남겨져 나중에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⁵⁹⁾ 마

전이나 권리의 제한, 성직자의 경우 장상의 권한 범위 안에서의 성무집행 금지 제재 등이다. 이러한 처벌은, 수도자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제명까지 이르기 전의 단계적 형벌로도 내릴 수 있다. Cf. Antonio Calabrese, *op.cit.*, pp.270~271.

59) 그러므로 장상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교회법적 증거로 주로 쓰이는 것이 장상이 불법적으로 떠난 수도자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이 편지에는 그동안의 사건들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담으면서도 자부적인 사랑과 함께 법적으로도 명료하게 정해진 시일 이내로 특정 수도원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고, 6개월 이상의 불법적 부재

찬가지로 장상의 노력에 대한 수도자의 응답도 모두 문서로 보관되어야 한다.

696조 1항에 따라 제명 사유가 되는 불법적 부재 6개월의 계산을 시작하는 날은 “수도자가 수도원을 떠난 날”부터가 아니라 “장상의 복귀 권고를 받은 날”부터라는 것에 교회법 학자들은 동의한다. 앞서서도 말하였듯이, 수도자가 수도원을 떠났음에도 장상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묵시적 허가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를 인지한 즉시 장상은 복귀 권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고유법과 관습에 따라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상급 장상이 “불법적 부재 선언”(declaratio absentiae illegitimae)⁶⁰을 하여 6개월 기간 계산의 시작점으로 삼는다면 아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고유법에 해당 규범이 있으면, 상급 장상은 해당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 선언과 함께 면책 선언(declaration of non-liability)을 할 수도 있다. 이는 각 국가나 지역의 사회적 법률에 따라서, 수도자가 수도원을 불법적으로 떠난 후 일으키는 각종 채무나 불이행, 불법 행위들에 대하여 수도회가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 부재 및 면책 선언은 해당 수도자에게 우선 보내져야 하고, 그 사본은 문서고에 보관되어야 한다.⁶¹

2.1.2. 상급 장상의 제명 절차 착수

장상의 복귀 명령에도 수도자가 불복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는 제명의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60) 이러한 선언에는 해당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에 대한 간략한 사건 개요와 장상의 복귀 권고, 수도자의 부정적 응답을 제시한 후,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수도자가 교회법 665조 2항에 따라 장상들의 권력을 벗어날 마음으로 수도원을 불법적으로 떠났음을 선언합니다”라는 것과 비슷한 문구만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61) Cf. Jane Mitchell/Daniel Ward, *Procedures and Documents for Canonical Separations and Other Canonical Processes*, Silver Spring, MD: Conference of Major Superiors of Men, 2001, Tab A3.

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상급 장상은 697조에 따라서 제명 절차를 착수할 수 있다. 이때부터 상급 장상은 보편법과 고유법에 따라 제명 절차에 관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원에 의해서 합당한 소송 절차의 결여로 제명이 무효화될 수”⁶²⁾ 있기 때문이다.

2.1.2.1. 제명 절차 착수를 위한 평의회 소집

상급 장상이 제명 절차를 착수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면 먼저 자기 평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명 절차 착수에 관한 평의회의 자문은 제명 절차의 유효성을 좌우하므로 반드시 행해져야 하며,⁶³⁾ 자문을 행한 뒤에는 그 회의록도 보관해야 한다.⁶⁴⁾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상급 장상은 제명 절차를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교회법 697조 1호에 따라서 증거를 모으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그간의 사건 개요를 정리하고 수도원을 떠난 수도자의 편지, 장상의 복귀 권고문, 주고받은 대화 내용, 관련 지인들의 증언 내용을 문서로 모아 두어야 한다.

62) 이찬우 편저, 『수도자와 봉헌생활』,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3, 337쪽.

63) 교회법 127조 1항은, 장상이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한 단체나 집단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행위의 유효성을 위하여 반드시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평의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때와는 달리, 자문만이 요구된다면 장상은 평의회의 부정적인 의견을 받더라도 행위를 진행할 수 있지만, 평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제명 절차를 착수한다면 그 절차는 무효이다. 그러나 평의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할 때, “자기의 판단에 따라 우월한 이유가 없는 한, 그들의 의견을, 특히 만장일치이면 물리치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127조 2항 2호)라는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Cf. Velasio De Paolis/Andrea D’Auria, *Le Norme Generali.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Urbaniana University Press, ²2014, p.408

64)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이하 수도회성)은 수도회가 보내오는 제명 교령 추진 청원을 받을 때, 언제나 상급 장상이 제명 절차 착수에 대한 평의회의 자문을 구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확인한다. 이 증명서는 그날 회의의 전체 의사록일 필요는 없고, 제명 절차 착수를 위한 평의회의 자문을 구했다는 내용과 함께 날짜와 장소, 상급 장상과 참석 평의원들, 임명된 공증관의 서명이 있으면 된다. Cf. Jesús Torres, “Forme di separazione dei membri dall’Istituto”, *Commentarium pro Religiosis et Missionariis* 98(2017), 66.

2.1.2.2. 두 번의 교회법적 경고

위의 사항들이 완료되면, 교회법 697조 2호에 따라 상급 장상은 그동안 모은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첫 번째 교회법적 경고를 내린다. 이 경고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명의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6개월 이상 지속된 불법적 부재이다. 2) 자기 자신을 변호할 권한을 온전히 보장하여야 한다. 즉, 교회법 698조에 따라 그가 직접 총원장과 연락하여 자기 방어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3) 개심하지 아니하면 제명이 뒤따를 것임을 명백히 위협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 내용 중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법적 경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전에 상급 장상이 자주 해당 수도자와 만나고 타이르며 되돌아오기를 권하고 경고하였다 하더라도, 제명 절차를 위한 교회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위의 세 가지 내용이 담긴 경고를 문서로 해당 수도자에게 통고를 하거나,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구두로 전달하여야 한다.⁶⁵⁾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경고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보다도 수도자의 회심과 교정이므로, 이를 제명을 위한 도구나 요식행위로 간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고문에는 성소에 대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다시 수도원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장상의 부드러운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⁶⁶⁾

교회법적 경고를 문서로 전달할 때에는 인편으로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할 수도 있다. 인편으로 전달할 경우, 전달자는 자신이 확실하게 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여야 한다.⁶⁷⁾ 우편으로 전달할 때에는 확실히 배달되었다는 증거가

65) 교회법 55조에 따르면 개별 행정 행위는 서면으로 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면 본문이 교부되지 못하게 장애되는 때에는, 공증관이나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읽어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원칙은 교회법적 경고를 내릴 때에도 유효하므로, 서면으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어려울 때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구두로써 경고하는 것이 좋다. 다만, 교회법 697조 2호는 한 명의 공증관 앞에서 서면 경고를 내리는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식으로 임명된 공증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한 명의 증인이 더 대동 되어, 적어도 두 명 이상이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 출석하고 있어야 한다.

66) Cf. *Ibid.*, 67.

67) 법적 확실성을 위하여, 전달 받은 수도자도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서명

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등기우편, 배달 증명, 더 나아가 내용 증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⁶⁸⁾ 두 명의 증인 앞에서 구두로 경고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록으로 작성하여 거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서명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수도자가 서명하기를 거부하더라도 경고는 통고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내용을 기록에 포함시킨다.⁶⁹⁾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고 연락도 끊긴 경우, 그를 찾으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후, 장상의 판단에 따라 교회법 56조와 1510조를 적용하여 해당 경고문을 공시함으로써 통고된 것으로 간주한 후 계속 ‘선택적 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⁷⁰⁾

첫 번째 교회법적 경고를 내렸음에도 그가 돌아오지 않거나 명백히 불응하는 답을 하는 경우, 적어도 15일 후에 두 번째 교회법적 경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두 번째 경고의 형식과 방법은 첫 번째 경고와 완전히 동일하다. 15일을 계산하는 시작점은 상급 장상이 경고문을 발송한 날이 아니라 그에게 경고가 전달 완료된 날이라

하기를 거부할 경우에도 통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교회법 56조 참조).

68) 우리나라는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그 배달 과정을 모두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등기우편의 배달 완료 이틀 후부터 배달 증명을 신청하여 출력할 수 있으니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면 내용 증명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만일, 해당 수도자가 제명 절차에 협조적이라면, 그에게 일반 우편을 부쳐 자신이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답신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한편, 오늘날의 현실에 맞추어 이메일이나 다른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도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상대방의 응답률에 따라서 신뢰도가 높고 전달이 완료되었다는 법적 확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69) 참조: 교회법전 55조.

70) 해당 경고문을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수도원 게시판에 공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전체 수도회나, 혹시 그가 현재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교구나 본당 게시판에 공시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을 통하여 혹시나 해당 수도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어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지인이 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그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Cf. Velasio De Paolis, *op.cit.*, p.586; Tiziano Vanzetto, *op.cit.*, p.413. 그러나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에 의해 개정된 694조에 따른 자동 제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기간은 해당 수도자의 자기 방어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교회법 201조 2항에 따라서 “유용 기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그가 몰랐거나 행위 불능이었던 기간, 또 공휴일은 15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법 203조 1항에 따라서 ‘시작하는 날’은 기간에 계산되지 않는다. 교회법은 최소 기간만을 규정할 뿐 최대 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꼭 15일의 유용 기간 후에 바로 두 번째 경고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상의 판단에 따라 몇 달이고 더 길게 미룰 수도 있다. 다만 제명 절차가 포기되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길게 미루어서는 안 된다.⁷¹⁾

2.1.2.3. 예심 절차의 마무리를 위한 평의회 의 소집

두 번째 교회법적 경고가 전달되었음에도 해당 수도자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거나 수도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15일이 지난 후 상급 장상은 평의회를 소집하여 이제까지 모은 자료와 두 번의 경고, 그에 따른 해당 수도자의 응답과 변론을 토대로 그의 교정이 가능한지를 논의하여야 한다.⁷²⁾ 상급 장상이 평의회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 동의인지 자문인지 교회법 697조 3항은 단순히 “cum suo consilio”라고 말하고 있을 뿐, 명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 고유법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교회법 학자들은 자문이라고 해석한다.⁷³⁾ 따라서, 상급 장상은 평의회 의 의견을 듣고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1) 해당 수도자의 교정 불가능성. 2) 해당 수도자의 변호가 불충분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예심 절차는 종료되고 총원장에게 보낼 조서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71) Cf. Antonio Calabrese, *op.cit.*, pp.321~322.

72) 만일, 수도회가 관구로 나뉘어 있지 않아 이제까지 절차를 진행한 상급 장상이 총원장이라면, 두 번째 교회법적 경고의 15일 후, 바로 교회법 699조에 따른 총평의회를 소집하여 제명 결정을 위한 합의체적 재판부를 구성한다. Cf. 이찬우 편저, 앞의 책, 338~339쪽.

73) Cf. Jean Beyer, “La dimissione nella vita consacrata”, *Vita consacrata* 28(1992/2), 167; Velasio De Paolis, *op.cit.*, p.587. 다만, 칼라브레세(Calabrese)는 상급 장상과 평의회가 함께 합의체적 행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Cf. Antonio Calabrese, *op.cit.*, p.322.

2.1.2.4. 조서 기록의 정리

상급 장상은 자신과 공증관이 서명한 모든 조서 기록을 총원장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 조서 기록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 모든 조서 기록에 대한 공증관의 인증서
 - 2) 상급 장상(관구장)의 제명 청원서
 - 3) 해당 수도자의 약력
 - 4) 장상의 복귀 권고문, 혹은 그의 복귀를 위한 장상의 노력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
 - 5) 제명 절차 착수를 논의한 평의회의 결의사항
 - 6) 첫 번째 교회법적 경고문과 수신 확인서의 사본. 있다면, 해당 수도자의 답신
 - 7) 두 번째 교회법적 경고문과 수신 확인서의 사본. 있다면, 해당 수도자의 답신
 - 8) 있다면, 해당 수도자의 편지와 변론 내용
 - 9) 그의 교정 불가능성을 논의하고 총원장에게 모든 조서 기록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평의회의 결의사항
 - 10) 그 밖의 증거 자료 및 관계자의 증언 및 관련 자료들⁷⁴⁾
- 위의 조서 자료들은 잘 정리하여 목차와 표지와 함께 철하여⁷⁵⁾ 총원장에게 보내야 한다.⁷⁶⁾

2.1.3. 총원장과 총평의회의 제명 결정

앞선 예심 절차를 진행한 상급 장상으로부터 모든 조서 기록을

74) Cf. Jane Mitchell/Daniel Ward, *op.cit.*, Tab 2; Luigi Sabbarese, “Esclaustrazione, uscita e dimissione dei religiosi dall’Istituto”, *Euntes Docete* 64(2011/2), 125.

75) 수도회성의 관행에 따르면, 조서 기록 각각의 페이지가 상급 장상과 공증관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하며, 조사를 행한 관구의 인장(sigillum)도 날인되어야 한다. 제명 교령의 추인권자가 교구장일 경우, 해당 교구의 관행을 따르면 될 것이다. Cf. Jesús Torres, *op.cit.*, 71.

76) 교회법 699조 2항에 따르면, 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 즉 고유한 원장 위에 아무런 위계적 장상이 없는 자치 수도승원의 경우, 법 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의 특별 감독에 위탁되듯이, 제명의 판정도 같은 교구장 주교가 내리므로, 모든 조서 기록은 그에게 보내져야 한다. Cf. *Ibid.*, 76.

전해 받으면, 총원장은 교회법 699조 1항에 따라서 제명을 결정하기 위한 총평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평의회는 총원장 말고도 적어도 네 명 이상으로 구성된 총평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⁷⁷⁾ 총원장은 총평의회와 더불어 조서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증거, 논증, 변호를 정확하게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은 합의체적인 비밀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총원장은 총평의회에게 동의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평의원들과 함께 하나의 합의체적인 의결기구를 구성하여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각각 하나의 표를 던지는 것이다. 이는 합의체적인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는 교회법 119조 2호에 따라서 진행되며, 회의 참석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제명이 결정된다.

제명 판정을 위한 합의체적인 의결기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즉, 제명의 적법성(*de legitimitate*)과 적합성(*de merito*)이다. 적법성(*de legitimitate*)은, 다시 절차의 적법성(*de legitimitate procedendi*)와 적용의 적법성(*de legitimitate applicandi*)로 나뉘는데, 제명이 절차법(*ius processuale*)과 실체법(*ius substantiale*)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명의 절차가 철저히 절차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제명 절차를 착수하기 전에 상급 장상이 평의회의 의견을 들었는지, 두 번의 교회법적 경고가 15일의 간격으로 내려졌는지, 해당 수도자의 자기 방어권(*ius defensionis*)이 보장되었는지, 두 번의 교회법적 경고 후에 상급 장상은 평의회를 소집하여 그의 교정 불가능

77) 적어도 19세기 후반부터 거의 모든 수도회들의 회헌은 총평의회가 적어도 네 명 이상의 총평의원들과 총원장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도회 회원의 숫자가 매우 줄어들었을 때, 오직 세 명의 총평의원을 규정하는 회헌이 승인되곤 하였다. 또한, 네 명의 총평의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정당한 이유로 방해되어 제명 결정을 위한 합의체적 재판부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1917년 교회법전 655조 1항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총평의원 중 누군가가 부족하면, 의장이 다른 총평의원들의 동의를 얻고 그를 대신하여 합의체적 재판부를 구성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만일 회헌이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Cf. *Ibid.*, 74.

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지, 조서 기록은 합법적으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 적용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명에 관한 실체법이 해당 사건에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핀다. 예를 들면, 정말로 해당 수도자가 6개월 이상 불법적 부재를 하였는지, 장상이 그를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러한 증거 자료들을 통하여 그의 교정 불가능성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certitudo moralis*)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제명의 적합성(*de merito*)은 수도자에게 제명의 형벌이 타당한지, 제명 말고 다른 형벌로 교정할 수는 없는지, 수도자의 변론과 제명을 요구하는 상급 장상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선익이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적법성과 적합성에 관한 판단 후에 제명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2.1.3.1. 제명 교령의 작성

제명 교령(*decretum dimissionis*)은 유효성을 위하여 법률상(*in iure*) 및 사실상(*in facto*)의 동기 이유를 요약하여서라도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교회법 16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비록 제명 교령이 판결문은 아니지만, 판결문과 비슷한 특징과 역할을 가지기 때문이다. 판결문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개요(*species facti*)와 동기 이유(*pars motiva in iure et in facto*), 주문(*pars dispositiva*)으로 구성된다.⁷⁸⁾ 이처럼 제명 교령도 판결문과 비슷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제명을 결정하는 주문만 있고 그 결론이 기반하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동기 이유가 없다면 무효라는 것이다.⁷⁹⁾ 뒤에서도 언급되겠지만, 제명 교령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78) 교회법 1611조와 1612조에 판결문의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에 대하여 잘 나와 있다. 이 조항들에 근거하여 판결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건의 개요(*species facti*)를 제시하는 서술 부분(*pars narrativa*), 판결의 법적 근거(*in iure*)와 사실 심리(*in facto*)를 제시하는 동기 부분(*pars motiva*),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판결 그 자체인 주문 부분(*pars dispositiva*)이다. Cf. Stephanu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Roma: Orbis catholicus-Herder, ⁶1954, p.763; Felix Cappello, *Summa iuris canonici in usum scholarum concinnata. Volumen 3*, Roma: Pontificia Universitas Gregoriana, ⁴1955, pp.297-298; 79) 교회법 1611조 3호와 1612조 3항에서도 주문과 동기 이유가 항상 함께 언급되

해당 수도자에게 10일 이내로 소원할 권리가 보장된다는 사실도 명시되어야 한다.

2.1.3.2. 제명 교령의 추인

제명 교령과 모든 조서 기록은 추인권자에게 보내져야 한다.⁸⁰⁾ 즉, 성좌 설립회의 경우 성좌로 보내져야 하고, 교구 설립회의 경우 해당 수도자가 등록된 수도원의 소재지 교구의 주교에게 보내져야 한다.⁸¹⁾

추인 절차 중에 추인권자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오직 제명 교령이 법으로 정해진 형식 절차를 따라서 발부되었는지, 그리고 추인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법적 요소들이 갖추어졌는지(*fumus boni iuris*)를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인권자는 “적합성”(de merito)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되고 오직 “적법성”(de legitimitate)만을 고려해야만 한다.⁸²⁾ 이는 제명 교령이 총원장이 작성한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며, 다른 권위자가 추인하였다고 해서 제명 교령이 추인권자의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도회 총원장의 행위로 남기 때문이다.⁸³⁾ 따라서 제명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제명권자인

듯이, 판결문의 핵심인 이 두 요소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동기 이유가 없는 주문은 무효한 것이고, 주문과 동기 이유의 관련성이 충분치 못하다면 그 판결은 공격을 받게 된다. Cf. Claudio Papale, *I processi. Commento ai canonici 1400-1670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Urbaniana University Press, 2017, p.351

80) 비록, 제명 교령은 수도회의 최고 권위자인 총원장에 의해 발부된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수도자의 정의와 공정, 자기방어를 더 보장하기 위하여 교회 입법권자는 추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추인을 받기 전에는 해당 수도자에게 제명을 통고해서는 안 되며, 오직 추인을 받고 난 후에 당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Cf. Pontificia Commissio Codici Iuris Canonici Authentice Interpretando, “Responiones ad proposita dubia”(1986.5.17.), *Acta Apostolicae Sedis* 78(1986), 1323.

81) 수도회가 설립된 교구의 주교도 아니고, 본원 소재지의 주교도 아니라, 해당 수도자가 등록된 수도원(*domus adscriptionis*) 소재지의 주교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셋은 서로 일치할 수도 있으나, 수도회가 여러 교구에 퍼져 있는 경우에는 서로 다를 수도 있다.

82) Cf. Joaquín Llobell, “La conferma del decreto di dimissione del religioso a norma del can. 700. Note sull’ermeneutica degli istituti rivolti all’attuazione del diritto di difesa”, *Ius Ecclesiae* 4(1992), 241.

83) Cf. Velasio De Paolis, *op.cit.*, p.589.

총원장의 소임이고, 추인권자는 제명의 적법성만을 감독할 소임이 있다. 그러므로 추인권자는 제명을 추인하거나 추인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제명을 다른 형벌로 대체하거나 무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절차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다. 따라서 제명을 위한 외적인 법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제명 교령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추인권자는 제명 교령의 추인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1.3.3. 제명 교령의 통고

제명 교령이 추인되면 추인권자는 총원장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총원장은 다시 예심 절차를 수행했던 상급 장상에게 전달하여, 그 상급 장상이 해당 수도자에게 추인된 제명 교령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명 교령의 통고 방법은, 앞서 교회법적 경고를 전달할 때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제명 교령에 해당 수도자가 10일 이내로 관할권자에게 소원할 수 있다는 권리를 명시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자기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명 교령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10일은 권리의 행사와 관련되므로, 교회법 201조 2항에 따라 ‘유효기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수도자는 10일의 유효 기간 이내에 관할권자에게 소원을 제기할 권리가 남아 있으므로, 제명 교령은 바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10일이 지나 소원을 제기하지 않을 때만 비로소 효과를 낸다.

3.1.3.4. 제명 교령에 대한 소원 제기

수도자는 제명 교령에 반하여 관할권자에게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관할권자란 성좌 설립 수도회의 경우 성좌이고 교구 설립 수도회의 경우 교구장 주교이다. 즉, 추인권자에게 다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⁸⁴⁾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추인은 제명 교령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여전히 제명 교령은 그것을 발부한 수도회 총원장의 행위로 남아 있기 때문

84) Cf. Antonio Calabrese, *op.cit.*, p.324; Luigi Chiappetta, *op.cit.*, p.833.

이다. 하지만 추인과 소원의 다른 점은, 추인은 오직 제명 교령의 적법성만을 검토하지만, 소원은 제명 교령의 적합성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법 1739조에 따라서 “소원을 심리하는 장상은 경우에 따라서 교령을 확정하거나 무효로 선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기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으며, 혹은 장상이 더욱 편리하다고 여기면 그것을 정정하거나 대체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⁸⁵⁾ 또한, 소원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제명 교령의 집행도 정지된다. 그러므로 비록 제명 교령을 통고 받았더라도, 소원을 제기하면 제명 교령은 아직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므로, 당사자는 여전히 수도자로 남아 있으며, 고유법에서 따로 제한하지 않는 한, 다른 수도자들과 완전히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소원의 관할권자가 제명 교령을 재확정할 때도 수도자는 다시 위계적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성좌 설립회의 경우 30일 이내에 사도좌 대심법원(Supremum Tribunal Signaturae Apostolicae)으로 소원할 수 있고, 교구 설립회의 경우 15일 이내에 사도좌로 소원할 수 있다.⁸⁶⁾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법 696조 1항 이하의 조항에 따라서 불법적 부재가 6개월간 지속되는 경우에 대한 ‘선택적 제명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하지만,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가 연락을 끊고 행방을 밝히지 않아 절차의 진행과 법적 확실성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앞에서 언급되었다. 그 결과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은 그러한 경우에도 제명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루었다. 이제는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에 어떻게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85) 교회법전 1739조.

86) Cf. Antonio Calabrese, *op.cit.*, pp.324-325.

2.2.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에 의해 개정된 694조에 따른 자동 제명 절차

2019년 3월 19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을 통하여 교회법 694조를 개정하시고, 같은 해 4월 10일 그 효력이 발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상급 장상은 이제 12개월 동안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를 자동 제명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자동 제명에 관한 실체법(*ius substantiale*)은 변경되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하고 절차를 명확히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2019년 9월 8일, 수도회성은 모든 수도회 총원장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교서 「공동생활」에 관한 회람”⁸⁷⁾을 보내며 새롭게 추가된 자동 제명 사유가 적용되는 사건들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회람은 새로 개정된 교회법 694조의 규정이 집행되도록 보살펴야 하는 총원장들에게 바뀐 규정을 설명하고 이를 집행 중에 지킬 방식을 상술하고 정하는 것이므로 교회법 34조에 따른 “훈령”(instructio)의 성격을 지니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2.2.1. 소재 불명 상태(*irreperibilitas*)의 의미

여기서 “소재 불명 상태”(irreperibilitas)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의 영어본은 이 용어를 “the location of the religious himself of herself is unknown”이라고 번역하였다. 즉, 장상에게 자기의 주소나 거주지, 아니면 적어도 자신을 찾을 방법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를 소재 불명 상태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그의 거주지만 모를 뿐, 해당 수도자와 연락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87) Congregatio pro Institutis vitae consecrate et Societatibus vitae apostolicae(이하 CIVCSVA), “Litterae circulares de Litteris Apostolicis Motu Proprio datis «*Communis vita*»”, *Communicationes* 51(2019), 423-426.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9년 9월 8일 수도회성 회람에서 등장하는 “irreperibilitas”는 영어본에서는 “inability of contacting” “unable to be contacted” “cannot be found”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⁸⁸⁾ 따라서, 해당 회람의 영어본에 따르면,⁸⁹⁾ “irreperibilitas”는 단순히 거주지 불명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미의 연락 두절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셜 네트워크 계정, 거주지 주소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와 직간접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그는 개정된 694조에서 말하는 “소재 불명 상태”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⁹⁰⁾

따라서 새로 개정된 교회법 694조 1항 3호에 따른 “소재 불명 상태이면서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에 다음과 같은 수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 1) 합법적 부재이지만 소재 불명인 수도자⁹¹⁾
- 2) 불법적 부재이지만 연락 가능한 수도자⁹²⁾

따라서 불법적 부재이면서 연락 두절 중인 수도자만이 교회법 694조 1항 3호에 따라서 자동 제명 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

2.2.2. 수도자를 찾기 위한 장상의 노력

수도자가 불법적으로 수도원을 떠난 상태가 되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장상은 교회법 665조 2항에 따라서 그를 애써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자주 수도자가 거주지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연락을 끊는다면, 그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수도자의 고의로

88) Cf. Congregation for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and Societies of Apostolic Life, *Circular Letter on the Motu Proprio of Pope Francis Communis vita*, Roma: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9, pp.12~14.

89) 해당 회람의 영어본도 수도회성에서 직접 번역하였으므로 그 의미의 진정성은 인정된다고 여겨져야 한다.

90) Cf. *Ibid.*, p.12.

91) “Religious who are legitimately absent but cannot be found”, *Ibid.*, p.12.

92) “Religious who are illegitimately absent but are able to be contacted”, *Ibid.*, p.12.

발생할 수도 있고, 무관심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해당 수도자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장상의 의무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지역 장상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수도회성의 이 회람에 따르면 상급 장상이 해야 할 의무로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즉, 상급 장상은 동료 수도자들이나 전임 상급 장상, 주교, 지역 성직자, 가족과 친지들에게 정보를 요구해서라도 그를 찾을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국법과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면서 국가 권위에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도자를 찾기 위한 관할 장상의 의무는 단순히 어쩌다가 한 번씩 그를 서둘러 찾아 조사하거나 누군가에게 맡긴 채 내버려 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되돌아와 자기 성소에 항구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그의 안위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꾸준히 드러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⁹³⁾

이러한 노력은 모두 법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문서로 만들어 확실한 증거로 남겨두어야 한다. 즉, 상급 장상이 직접, 혹은 타인을 통하여, 해당 수도자와 친분을 유지하던 동료 수도자, 지인, 가족, 친척들과 소통하며 그를 찾기 위한 노력을 언제, 어떻게 기울였는지를 모두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만일 국가 권위나 교구장 주교, 혹은 다른 기관에게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면 그러한 자료도 모두 남겨두어 장상의 노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2.3. 소재 불명 선언(*declaratio irreperibilitatis*)

수도자를 찾기 위한 장상의 노력이 완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여 허사로 돌아가거나, 혹시나 그의 소재는 찾았을지라도 그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를 거부하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급 장상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와의 연락 두절 상태를 개선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모은 증거 자료들과 정황들을 토

93) Cf. CIVCSVA, *op.cit.*, 424.

대로 자기 평의회와 함께 “소재 불명 선언”(declaratio irreperibilitatis)을 내려야 한다.⁹⁴⁾

이 선언문은 교회법 694조 1항 3호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확실성에 도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이 선언문이 없다면 수도회성은 교회법 694조 3항에서 규정한 추인을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소재 불명 선언”이 교회법 694조 1항 3호에서 언급된 12개월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12개월의 계산을 시작하는 날은 수도자가 수도원을 떠난 날도 아니고 수도자가 수도원을 떠나서 연락을 끊은 날도 아니다. 장상이 그를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난 후, 그러한 기록과 증거 자료들을 근거로 상급 장상이 자기 평의회와 함께 “소재 불명 선언”을 내린 날이 바로 12개월의 계산을 시작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이로써 12개월의 기한 만료일도 정해진다.⁹⁵⁾ 그 결과, 수도자가 수도원을 불법적으로 떠난 실제 기간은 12개월보다 더 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12개월은 소재 불명 기간이지 불법적 부재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⁹⁶⁾

따라서, 이 “소재 불명 선언”이 앞에서 언급한 “불법적 부재 선

94) “소재 불명 선언”의 내용은, 해당 수도자에 대한 일련의 사건 개요를 서술한 뒤, 그를 찾기 위한 장상의 노력을 순서대로 기술하고 나서, “위에 설명된 것들을 근거로 하여 불법적 부재중인 해당 수도자가 교회법 694조 1항 3호에 언급된 소재 불명 상태를 선언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선언 날짜와 장소, 상급 장상과 평의회 의 서명이 뒤따른다.

95) Cf. *Ibid.*, 425.

96) 여기서 말하는 12개월은 교회법 201~203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되어야 한다. 먼저, 12개월은 교회법 201조 1항에 따른 연속 기간이므로, 1개월을 단순히 30일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윤년이면 아니든 상관없이, 달력에 있는 대로 따져야 한다. 그러므로 12개월은 1년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203조 1항에 따라 시작하는 날은 기간에 계산되지 않고 끝나는 날은 기간에 계산이 된다. 그러므로, 12개월은 다음 해에 시작한 날과 정확히 같은 날이 종료되면서 끝나게 된다. 즉, “소재 불명 선언”을 한 지 1주년 되는 날이 종료되면서 12개월이 끝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급 장상이 평의회와 함께 2020년 1월 15일 9시에 소재 불명 선언을 했다면 같은 날 9~24시는 12개월의 기간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12개월은 2021년 1월 15일이 종료되는 순간 즉, 24시에 마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상급 장상과 평의회는 다음 날인 2021년 1월 16일에야 비로소 자동 제명 선언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언”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적 부재 선언”은 교회법 696조 1항에서 언급된 6개월간 지속하는 불법적 부재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인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소재 불명 선언”은 694조 1항 3호에서 언급하는 12개월간 지속하는 소재 불명 상태의 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적 부재 선언은 해당 수도자가 아직 연락 가능한 상태일 때 내리는 것인 반면, 소재 불명 선언은 연락 두절 상태일 때 내린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불법적 부재 선언을 내린 후에 만일 수도자가 연락 두절 상태가 된다면 소재 불명 선언도 내려야 한다.⁹⁷⁾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9년 4월 10일 이전의 사례들에는 적용될 수 없다.⁹⁸⁾ 그러므로, 이미 12개월 넘게 소재 불명 상태인 불법적 부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694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2019년 4월 10일부터 “소재 불명 선언”을 한 후 1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2020년 4월 10일전까지는 소재 불명 불법적 부재로 인한 자동 제명이 선언될 수 없을 것이다.

2.2.4. 자동 제명 선언(*declaratio dimissionis ipso facto*)

“소재 불명 선언”을 내린 후, 12개월이 경과되었고 불법적 부재 수도자의 연락 두절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었다면, 상급 장상은 평의회와 더불어 교회법 694조에 따라서 그 사실에 대한 선언(*declaratio facti*)⁹⁹⁾을 내려야 한다.

97) 그러므로, 소재 불명 상태인 수도자에 대하여 수도회는 694조에 따른 자동 제명을 진행할 수도 있고, 696조에 따른 선택적 제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절차 중 어떤 것을 택할지는 관할 상급 장상의 신중한 판단에 맡겨진다. 예를 들면, 교회법 696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선택적 제명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절차의 어떤 단계 중에 해당 수도자가 연락 두절 상태가 된다면, 소재 불명 선언을 내리며 694조에 따른 자동 제명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그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문서를 게시판에 공시하여 통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계속 696조 이하의 선택적 제명 절차를 진행하여 제명 교령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98) Cf. *Ibid.*, 425.

99) 자동 제명 선언의 내용은, 그 동안의 사건 개요를 서술한 뒤, “소재 불명 선언

여기서 “평의회와 더불어”(cum suo consilio)라는 말은 상급 장상이 평의회에 동의나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체적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상급 장상이 평의회와 함께 공동으로(in solidum)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동 제명과 관련된 모든 법적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 사실 자체로 이미 제명은 이루어졌고, 상급 장상과 평의회는 그것이 법적으로 확정되도록 선언하는 것뿐이므로¹⁰⁰⁾ 상급 장상과 평의회는 모든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제명 선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¹⁰¹⁾ 평의원들도 소재 불명 선언이 합법적으로 내려진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연락 두절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2.2.5. 자동 제명 선언의 추인(confirmatio declarationis)

다른 자동 제명 사유들, 즉 “가톨릭 신앙에서 공공연하게 떠난 자”와 “혼인을 맺었거나 국법상만으로도 혼인을 시도한 자”의 경

을 한 지 12개월이 지났음에도 그를 찾을 수 없으므로 교회법 694조 1항 3호와 2항에 따라서 그가 이 사실 자체로 제명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는 문구로 충분하다. 그리고 날짜와 장소, 상급 장상과 평의원들의 서명이 뒤따른다.

100) 만일, 12개월이 지난 후, 아직 자동 제명 선언을 내리기 전에, 수도자가 우연히 복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계 논의가 부족하지만,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미 제명된 것으로 간주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데파올리스(De Paolis)도 설명하듯이 (Cf. Velasio De Paolis, *op.cit.*, p.578.), 자동 제명 선언은 단지 외적 법정에서 제명을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교회법 694조 1항 3호에 따라서 12개월간 소재 불명인 수도자는 이미 그 사실 자체로 제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하면, 자동 제명 선언은 해당 수도자의 제명의 유효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해당 수도자가 소재 불명 선언이 내려진 후, 12개월이 지나고 하루 만에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미 제명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해당 수도자가 고의로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거나, 절차가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추인권자에 의해 추인이 거부될 수도 있고, 추인되었다 하더라도, 교회법 1732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101) Cf. Antonio Calabrese, *op.cit.*, pp.304-305; Tiziano Vanzetto, *op.cit.*, pp.396-397.

우는 상급 장상이 평의회와 더불어 내리는 선언으로 자동 제명 절차가 종료된다. 그러나 현재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665조 2항에 따라, 현재 소재 불명 상태로 12개월 동안 계속 불법적으로 수도원을 떠난 자”의 경우는 자동 제명 선언이 추인권자의 추인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추인권자는, 성좌 설립회는 성좌이고 교구 설립회는 본원 소재지의 주교이다.¹⁰²⁾

따라서, 상급 장상은 자동 제명 선언문의 사본뿐만 아니라 소재 불명 선언문, 해당 수도자를 찾기 위한 장상의 노력을 입증하는 문서의 사본들, 그 밖의 관련 자료들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자신의 청원서와 함께 총원장에게 보내고, 총원장도 자신의 청원서와 함께 이를 추인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추인권자의 임무는, 제명 교령의 추인과 마찬가지로, 자동 제명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에 의해 개정된 694조가 올바르게 적용되고 수도회성의 회람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재 불명 수도자를 찾기 위한 장상의 노력은 충분했는지, 충분한 노력 끝에 연락 불가능성이 증명되어 소재 불명 선언이 합법적으로 내려졌는지, 그로부터 12개월이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를 검토하여,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오남용을 예방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추인권자는 추인을 거부할 수 없다. 추인권자가 추인하면 자동 제명 선언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3.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의 의의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는 “공동생활은 수도 생활의 본질적 요소입니다”¹⁰³⁾라는 말씀으로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

102) 교회법 700조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700조에 따르면, 제명 교령의 추인은 해당 수도자가 등록된 수도원의 소재지 주교의 소임이었다. 하지만, 자동 제명 선언의 추인은 본원 소재지 주교에게 맡겨진다. 참조: 교회법전 694조 3항.

을 시작하신다. 그러므로 이 자의교서가 발표된 이유는 수도 생활의 본질적 요소인 공동생활을 더 충실히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도이며, 불법적으로 떠난 수도자에게는 합당한 조치를 하여 수도 공동체가 필요한 규율을 지키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물론 불법적으로 떠나 연락이 끊긴 수도자들을 제명하는 방법이 자의교서 「공동생활」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불법적 부재가 6개월간 지속하는 경우, 교회법 696조 이하의 규정들을 통하여 해당 수도자를 장상의 판단에 따라서 제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장상의 판단에 따라서 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한, 합법적인 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수도자와 수도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서 교환이 필요한데, 해당 수도자와 수도회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정업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수도자가 잠적하여 연락을 끊었을 때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 제명 적용을 위한 법적 확실성도 추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었다. 더군다나, 아직 실무 경험이 별로 없는 신생 수도회의 경우, 제명 절차라는 중대한 법적 업무를 미리 경험하지 못하여 미흡하고 소홀하게 다룰 위험성도 있었다. 따라서, 이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관할 장상은, 때로는 다른 바쁜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불법적으로 떠난 수도자를 찾기 위한 노력도, 그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러한 수도회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2019년 3월 19일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을 제정하셨다. 그 결과, 교회법 694조가 개정되어, 불법적 부재 중인 수도자가 소재 불명 상태로 12개월이 지나면, 그 사실 자체로 제명이 이루어지도록 안배되었다. 상급 장상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평의회와 함께 자동 제명 선언을 내리고, 그것을 추인권자에게 추인 받는 것으로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

103) Francesco, “Motu proprio *Communis vita*”, *L'Osservatore Romano*(Edizione italiana) 27 marzo 2019, 9.

었다.

이러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개혁은, 수도회를 불법적으로 떠나 세속에서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법적으로만 수도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그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매울 필요가 있었다. 수도 신분은 단순히 법적인 것도 아니고, 몇몇 경고문이나 제명 교령과 같은 법적인 행위에만 달린 것만도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 신분은 수도 생활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도 생활은 공동생활이라는 필수적인 요소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수도 생활을 떠나 연락을 끊고 수도회와 아무런 실제적인 유대관계가 없는 수도자는,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법적인 유대관계도 끊기고, 서원과 선서에서 비롯된 모든 권리와 의무도 그 사실 자체로 끝나도록 교황의 자의교서를 통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된 것이다.¹⁰⁴⁾

그러므로 자의교서 「공동생활」은 관할 장상의 재량을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법적으로도 확정하도록 의무 지운다. 장상은 더 이상 불법적으로 떠난 수도자의 제명을 자신의 판단만으로 무기한 미룰 수 없다. 그의 소재 불명 상태가 12개월이 되면 장상의 의도와 행위와는 상관없이 제명은 그 자체로 이루어지고, 장상은 그것을 법적으로도 확정할 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법 개정이 수도자의 수도 성소 포기를 더 부추킨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종신서원 수도자라도 수도원을 떠나 12개월만 연락을 끊으면 서원 면제가 이루어지고 평신도 신분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따른 아무런 교회법적 형벌도 없다.¹⁰⁵⁾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도 생활을 완전히 떠나 세속에 머무

104) 참조: 교회법전 701조.

105) 다른 자동 제명 사유들, 즉, “가톨릭 신앙에서 공공연하게 떠난 자”에게는 교회법 1364조 1항에 따라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가 규정되어 있고, “혼인을 맺었거나 국법상만으로도 혼인을 시도한 자”에게는 성직자의 경우 교회법 1394조 1항에 따라서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가, 성직자가 아닌 종신서원 수도자의 경우 교회법 1394조 2항에 따라서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가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새로 추가된 자동 제명 사유인 12개월간 소재 불명의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에게는 아

르고 있는 수도자에게 서원의 의무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쉽게 죄짓도록 만드는 구속으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영혼의 구원이 교회의 최상의 법이라면, 수도원을 불법적으로 떠난 수도자들도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들이며, 교회는 그들도 보살필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교서 「공동생활」은 이러한 교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교회 입법권자의 의도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

공동생활은 수도 생활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모든 수도자들에게는 교회법 665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도원 상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하여 수도원 밖에서 지내는 수도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수도자의 부재(absentia religiosorum)라고 부른다. 이 부재는 합법적인 허가를 받고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때로는 안타깝게도 불법적으로 수도원을 이탈하여 발생하는 “불법적 부재”일 수도 있다.

과거에는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를 “변절”(apostasia) 혹은 “탈주”(fuga)라고 불렀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마음으로 수도회를 떠나면 “변절”이라고 불렀고, 언젠가는 돌아올 마음으로 수도원을 떠나면 “탈주”라고 불렀던 것이다. 하지만 1983년 교회법전은 이 둘 사이를 구별하지 않고 오직 “불법적 부재”(absentia illegitima)라고만 부른다. 교회법 665조 2항에 따르면 장상들의 권력을 벗어날 마음으로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수도원을 떠나는 것을 불법적 부재라고 부른다. 장상은 불법적으로 부재중인 수도자를 애써 찾아서 그가 수도원에 돌아와 자기 성소에 항구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수도자가 성소에 항구하다는 것은 수도자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수도회, 더 나아가 온 교회의 선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를 찾는 것은 쉽지 않고, 찾았더라도 설득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러 번의 노력 끝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에 제명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의 거주지를 알거나 연락 가능한 상태라면, 상급 장상은 6개월이 지난 뒤 교회법 696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서 선택적 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즉,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절차에 착수하여, 15일 간격으로 두 번의 교회법적 경고를 내리며 그의 변론을 듣고 모든 조서 기록을 평의회와 함께 검토하고 총원장에게 보내는 것이다. 총원장은 총평의회와 함께 합의체적인 방법으로 비밀 투표를 하여 제명을 결정하고 제명 교령을 작성하여 추인권자의 추인을 받고 해당 수도자에게 교령을 통고함으로써 그의 제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가 소재 불명 상태라면, 위의 제명 절차를 법적 확실성을 가지고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19일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는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을 제정하시어 교회법 694조를 새롭게 개정하셨다. 또한, 2019년 9월 8일 수도회성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교서 「공동생활」에 관한 회람”을 발표하여 새로 개정된 자동 제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상급 장상은 소재 불명 상태인 수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시행한 후, 그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소재 불명 선언”을 내려야 하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상급 장상은 평의회와 더불어 “자동 제명 선언”을 작성하고 추인권자에게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재 불명 수도자에 대한 제명 절차가 더 간소화되었다.

수도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 공동생활은 모든 이들에 의하여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장상은 공동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어떤 수도자가 수도원을 불법적으로 떠났을 경우, 그를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야 한다. 이는 그 수도자 개인의 성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규율과 질서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를 찾거나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부질없고, 법으로 규정된 기간도 지났다면, 제명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가 수도 생활을 완전히 떠나 세속 사람과 실질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이 되었다면,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가 법적으로도 수도 신분을 면할 수 있게끔 합법적인 절차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하겠다. 이렇게 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여, 불법적으로 떠난 수도자들이 여전히 수도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일어날 수도 있는 추문과 불확실성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장상들에게 있다. 그리하여 수도 생활의 본질인 공동생활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올바르게 지켜 나가야 하겠다.

<부 록>

교회법전의 몇몇 규정들을 개정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공동생활」¹⁰⁶⁾

공동생활은 수도 생활의 본질적 요소이고 “수도자들은 소속 수도원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상주하여야 하고, 자기 장상의 허가 없이는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교회법 665조 1항).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수도자들이 합법적 장상의 권한에서 스스로 벗어나 수도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떠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가끔 그들의 행방을 찾아내지도 못하였습니다.

교회법전은 장상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떠난 수도자를 찾아 그가 되돌아와 자기의 성소에 항구하도록 도와줄 것을 명합니다(교회법 665조 2항 참조).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장상이 떠난 수도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교회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불법적 부재가 적어도 6개월이 지나면(교회법 696조 참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교회법 697조 참조) 수도회로부터 제명하는 소송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수도자가 머무는 장소를 모른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가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불법적 부재가 6개월간 지속된 후 제명하도록 정하는 법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도회가 필요한 규율을 지키도록 도와주고 불법적으로 떠난 수도자, 특히 소재 불명인 경우에 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본인은 교회법 694조 1항의 수도회로부터 그 사실 자체로 제명되는 사유들 가운데, 수도원을 떠나 적어도 12개월간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불법적 장기 부재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교회법 694조 2항에 제시된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상급 장상에 의해 이루어진

106) Francesco, “Lettera apostolica in forma di ‘motu proprio’ del Sommo Pontefice Francesco *Communis Vita* con la quale vengono mutate alcune norme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Sequela Christi* 45(2019/1), 189~191에 실린 내용을 필자가 비공식 번역하였다.

제명 선언이 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좌의 추인을 받아야 하고, 교구설립 수도회일 경우에는 본원 소재지의 주교에게 추인권이 있습니다.

694조에 새로운 호가 도입됨에 따라서 재속회와 관련되는 729조에도 수정이 요구됩니다. 재속회는 불법적 부재에 선택적 제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이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조. 교회법 694조는 전부 다음으로 대체된다.

① 그 사실 자체로 회에서 제명된 자로 간주되어야 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가톨릭 신앙에서 공공연하게 떠난 자
2. 혼인을 맺었거나 국법상만으로도 혼인을 시도한 자
3. 665조 2항에 언급된 대로 불법적으로 수도원을 떠나 연속된 12개월 동안 소재 불명 상태로 있는 자

② 이러한 경우에, 상급 장상은 평의회와 더불어 지체 없이 증거를 모은 후 그 사실에 대한 선언을 내려 제명이 법적으로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 1항 3호의 경우에 이 선언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성좌에 의해 추인되어야 한다. 교구 설립회는 본원 소재지의 주교에게 추인권이 있다.

제2조. 교회법 729조는 전부 다음으로 대체된다.

회원은 694조 1항 1호와 2호 및 695조의 규범에 따라 회에서 제명된다. 회원은 그 외에도 비교적 중대하고 외적이며 죄책이 있고 법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다른 제명 이유들도 정하여야 하고, 697~700조에 규정된 제명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제명된 자는 70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본인은 자의교서 형태의 이 사도적 서한으로 정해진 모든 것이

견고하고 확고한 효력을 가지도록 명령합니다. 마땅히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또한 본인은 이 자의교서가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 간행됨으로써 공포되고, 2019년 4월 10일부터 효력을 가지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도좌 관보에도 출판하도록 명령합니다.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2019년 3월 19일 성 요셉 대축일
교황 재위 제7년
프란치스코

[참고문헌]

1. 단행본

- Andrés, Domingo, *Le forme di vita consacrata. Commentario teologico-giuridic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Edizioni Curia, ⁷2014.
- Beyer, Jean,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Milano: Ancora, 1989.
- Calabrese, Antonio, *Istituti di vita consacrata e Società di vita apostolica*, Roma: Libreria Editrice Vaticana, ³2010.
- Cappello, Felix, *Summa iuris canonici in usum scholarum concinnata. Volumen 2*, Roma: Pontificia Universitas Gregoriana, ⁵1951.
- _____, *Summa iuris canonici in usum scholarum concinnata. Volumen 3*, Roma: Pontificia Universitas Gregoriana, ⁴1955.
- Chiappetta, Luigi,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vol.1*, Bologna: EDB, ³2011.
- Congregation for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and Societies of Apostolic Life, Circular Letter on the Motu Proprio of Pope Francis *Communis vita*, Roma: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9.
- Conte a Coronata, Matthaeus,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ad usum utriusque cleri et scholarum. volumen 1*, Roma: Domus Editorialis Marietti, ³1947.
- De Paolis, Velasio,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Edizione rivista e ampliata a cura di Vincenzo Mosca*, Venezia: Marcianum Press, 2010.
- De Paolis, Velasio / D'Auria, Andrea, *Le Norme Generali.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Urbaniana University Press, ²2014.
- Michiels, Gommarus, *Normae generales juris canonici. Volumen primum*, Paris: Typis Societatis S. Joannis Evangelistae, ²1949.
- Mitchell, Jane/Ward, Daniel, *Procedures and Documents for Canonical Separations and Other Canonical Processes*, Silver Spring, MD: Conference of Major Superiors of Men, 2001.
- Papale, Claudio, *I processi. Commento ai canoni 1400-1670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Urbaniana University Press, 2017.
- Schaefer, Timotheus, *De Religiosis ad normam codicis iuris canonici*, Roma: Editrice "Apostolato Cattolico", ⁴1947.
- Sipos, Stephanus, *Enchiridion iuris canonici*, Roma: Orbis catholicus-Herder, ⁶1954.
- Tabera, Arturo, et al., *Il diritto dei religiosi. Manuale teorico pratico sugli Stati di*

perfezione, Roma: Commentarium pro religiosis, 1961.

이찬우 편저, 『수도자와 봉헌생활』,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3.

2. 정기간행물

Anaya Torres, Juan M., “La separazione dall’istituto di vita consacrata. I. L’assenza dalla comunità”, *Quaderni di diritto ecclesiale*, 23(2010), 456~470.

Beyer, Jean, “La dimissione nella vita consacrata”, *Vita consacrata* 28(1992/2), 157~170.

Congregatio pro Institutis vitae consecrate et Societatibus vitae apostolicae, “Litterae circulares de Litteris Apostolicis Motu Proprio datis «*Communis vita*»”, *Communicationes* 51(2019), 423~426.

Francesco, “Lettera apostolica in forma di ‘motu proprio’ del Sommo Pontefice Francesco *Communis Vita* con la quale vengono mutate alcune norme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Sequela Christi* 45(2019/1), 189~191.

Jiménez Echave, Aitor, “Absentia a domo Instituti(CIC Can.665)”, *Sequela Christi*, 36(2010/2), 189~203.

Llobell, Joaquín, “La conferma del decreto di dimissione del religioso a norma del can. 700. Note sull’ermeneutica degli istituti rivolti all’attuazione del diritto di difesa”, *Ius Ecclesiae* 4(1992), 235~254.

O’Reilly, Michael, “Permission of absence from the community”, *Informationes SCRIS*, 10/2(1984), 69~78.

Paciolla, Sebastiano, “Cor orans. Una vocazione nel cuore della Chiesa”, *Sequela Christi*, 44(2018/1), 117~122.

Pontificia Commissio Codici Iuris Canonici Authentice Interpretando, “Responiones ad proposita dubia”(1986.5.17.), *Acta Apostolicae Sedis* 78(1986), 1323.

Rodríguez Carballo, José, “Nel segno della responsabilità condivisa”, *Communicationes* 51(2019), 126~129.

Sabbarese, Luigi, “Esclaustrazione, uscita e dimissione dei religiosi dall’Istituto”, *Euntes Docete* 64(2011/2), 99~129.

Sastre Santos, E., “Nota sobre la Religiosa y el servicio a sus padres necesitados”, *Commentarium pro Religiosis et Missionariis*, 75(1994), 203~220.

Torres, Jesus, “L’assenza dalla casa religiosa”, *Informationes SCRIS* 19(1993), 72~104.

_____, “Forme di separazione dei membri dall’Istituto”, *Commentarium pro*

Religiosis et Missionariis 98(2017), 7~90.

3. 사전 및 편집단행본

Vanzetto, Tiziano, “La dimissione nella vita consacrata”, in *Il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IV. Prassi amministrativa e procedure speciali*, Gruppo Italiano Docenti di Diritto Canonico(ed.), Roma: Lateran University Press, 2014, pp.389~425.

기경호, “수도원”, 『축성생활 용어집』, 축성생활신학회 엮음, 프란치스코 출판사, 2015, 82~85쪽.

4. 신문기사

Francesco, “Motu proprio Communis vita”, *L'Osservatore Romano*(Edizione italiana), 27 marzo 2019, 9.

국문초록

수도 생활에 있어 공동생활은 본질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수도회를 떠나 수도원 밖에서 지내는 수도자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다. 이러한 심각한 규율 위반을 저지르는 수도자들을 교회법은 제명 처분까지 규정하며 엄격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수도자가 불법적으로 떠나면, 장상은 그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런데도 불법적 부재가 6개월간 지속하면 상급 장상은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명 절차를 착수할 수 있다. 그러면, 상급 장상은, 언제나 해당 수도자에게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해당 수도자에게 15일 간격으로 두 차례 교회법적 경고를 내려야 한다. 그럼에도 수도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상급 장상은 다시 평의회를 소집하여 그의 교정 불가능성과 변론의 불충분함을 확인하고, 모든 조서 기록을 정리하고 그것을 총원장에게 보낸다. 총원장은 적어도 네 명 이상의 총평의원들과 합의체적인 비밀 투표 방식으로 제명을 결정하고, 제명 교령을 작성하여 성좌 설립회는 성좌에게, 교구 설립회는 교구장 주교에게 추인을 받고 해당 수도자에게 통고함으로써 그의 제명은 이루어진다.

불법적으로 떠난 수도자가 연락마저 끊으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9년에 개정하신 교회법 694조에 따라서 자동 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수도자가 연락 두절 상태가 되더라도, 장상은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찾아야 하고, 그럼에도 그를 찾을 수 없으면, 상급 장상은 그에 대한 “소재 불명 선언”을 한 후, 12개월이 지나면, 상급 장상은 평의회와 함께 그 사실 자체로 인한 제명 선언을 내린다. 이 선언은, 성좌 설립회는 성좌로부터, 교구 설립회는 본원 소재지 교구장 주교로부터 추인 받아야 한다.

수도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공동생활은 모든 이들에 의

하여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도자가 공동생활을 포기하고 불법적으로 공동체로부터 이탈할 경우, 그를 찾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 수도자 개인의 성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규율과 질서, 더 나아가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교회법 694조를 적합하게 개정하시어 불법적 부재중인 수도자가 12개월 동안 연락 두절 상태가 될 경우, 합법적으로 제명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로 인한 문제와 추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수도회는 불법적 부재 사건에 대한 법 절차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도 생활의 본질인 공동생활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올바르게 지켜 나아가야 하겠다.

▶ 주제어: 공동생활, 수도회, 수도자, 불법적 부재, 교회법, 제명.